

투자위험등급 :  
3등급  
[ 중간 위험 ]

흥국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2년 8월 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8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주) 본점 ☎ 02-2122-2800 [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협회코드 : 95113)								
(종류) 클래스	A-1	C-1	C-2	C-3	C-4	C-i	C-e	C-w	C-y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5114	95115	95116	95117	95118	15054	95119	19922	2738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협회코드 : 95113)								
종류(클래스)	A-1	C-1	C-2	C-3	C-4	C-i	C-e	C-w	C-y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5114	95115	95116	95117	95118	15054	95119	19922	2738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 6. 7	집합투자기구 최초 효력발생일
2009. 7. 8	집합투자기구 종류C-i 추가
2010. 2. 23	집합투자기구 종류C-w 추가
2010. 3. 5	투자대상 신용등급 상향
2010. 5. 10	집합투자기구 종류C-y 추가 및 투자대상(장내파생상품) 제외
2010. 8. 30	환매 정기지급금 추가
2010. 9. 6	환매 정기지급금 보완
2012. 4. 16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정정
2012. 6. 7	상호변경(흥국투자신탁운용 → 흥국자산운용)
2012.7.10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흥국알토란공모주증권투자신탁→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3층 (대표전화 : 02-2122-2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2.8.6현재)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성일환	1969	채권운용 본부장	85개	71,733억	- 서강대 경제학과 - 93.12~00.02 : 동부증권 채권팀 - 00.02~01.04 : 동부투신 채권운용팀 - 01.06~02.12 : 서울투신 채권운용팀 - 03.01~04.07 : 유리자산 채권운용팀 - 04.07~11.03 : 동부자산 채권운용본부 - 11.04~현재 : 흥국자산 채권운용 본부장
전성문	1972	주식운용 본부장	53개	1,895억	- 경희대 재무학과 - 00.12~02.01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02.01~03.10 : 메리츠투자자문 운용팀

					- 04.03~09.04 : 이스타투자자문 운용팀 - 09.04~11.05 : 마이애셋자산 자산운용팀 - 11.05~12.07 : 우리자산 주식운용본부 - 12.07~현재 : 흥국자산 주식운용 본부장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 및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09.08.11. 주식운용본부장 김성일(1967) 운용전문인력 말소.
- 2009.09.30. 주식운용본부장 김지훈(1970) 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0.09.30 말소
- 2010.10.07. 주식운용본부장 이동근(1968) 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1.12.07 말소
- 2011.04.08. 채권운용본부장 한성조(1964) 책임운용인력 말소
- 2011.04.13. 채권운용본부장 성일환(1969) 책임운용인력 신규
- 2011.12.8. 주식운용본부장 최창훈(1971) 책임운용인력 신규 / 2012.2.29 말소
- 2012. 3.1. 주식운용본부 팀장 이태진(1971) 책임운용인력 신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 (혼합채권형)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판매보수(연간, %)			
			선취	환매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1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4)	2009-7-3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 금액의 0.3%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0.3500	0.9000	0.0230	0.0170
종류 C 1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5)	2009-6-29	제한없음	-		0.3500	0.9500	0.0230	0.0170
종류 C 2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6)	2010-7-1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 상인 수익자	-		0.3500	0.8500	0.0230	0.0170
종류 C 3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7)	2011-7-4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 상인 수익자	-		0.3500	0.7600	0.0230	0.0170
종류 C 4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8)	2012-7-2	종류 C3 수익증 권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수익자	-		0.3500	0.6800	0.0230	0.0170
종류 C - i 수익증권 (펀드코드: 1 5 0 5 4)	2009-7-10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0.3500	0.6000	0.0230	0.0170

종류 C-e 수익증권 (펀드코드: 95119)	2009-7-1	온라인 가입자	-	0.3500	0.6640	0.0230	0.0170
종류 C-w 수익증권 (펀드코드: 19922)	2010-3-12	일임형종합관리계, 좌, 금전신탁계좌	-	0.3500	0.0000	0.0230	0.0170
종류 C-y 수익증권 (펀드코드: 27383)	미설정	변액보험	-	0.3500	0.0100	0.0230	0.0170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 수익자는 채권 및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투자비율 (투자신탁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채 권	9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A-</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 식	30% 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등과 합산하여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 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b>A2-</b>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집합투자증권등	2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환 매 조 건 부 매 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증 권 의 대 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증 권 의 차 입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	--------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 주식,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②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채권, 주식,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어 및 증권의 차입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②투자신탁 일부해지
-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ul> </li> <li>-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li> </ul>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p>	
동일법인 투자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종목의 투자 및 동일법인의 투자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②투자신탁 일부해지
-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주식에의 투자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는 기업탐방, 외부 Research 자료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 할 예정입니다.
- (2)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 이상) 등에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 (3)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금리])**

※ KOSPI지수 :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입니다.

※ KOB120 지수 : KIS 채권평가에서 공시하는 국내 채권시장의 채권운용 듀레이션이 1년이 되도록 종합채권지수를 재구성한 총수익 지수(Total Return Index)입니다.

※ CD 금리 :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정기예금 금리로써 통상 91물(3개월)을 말합니다.

※ 지수 선정사유 : KOSPI 지수는 국내증권시장을 KOB120과 CD지수는 듀레이션 1년 수준의 국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권 및 채권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고, 시장금리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되는 증권투자기구(혼합채권형)로서 이 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 자 원 본 손 실 위 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 장 위 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 율 변 동 위 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 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국 가 위 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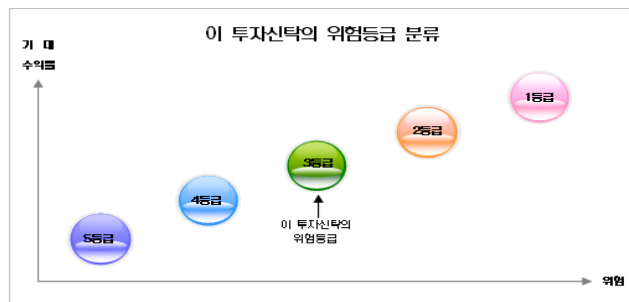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 자 산 가 치 변 동 위 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 매 연 기 위 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9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고 30%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는 낮은 위험수준을 갖으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기본 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 등을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흥국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2011.12.28일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요 내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등)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초과 60%미만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이하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흥국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투자계약증권, 상품(Commodity), REITs,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주3) ”중위험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 이하), 후순위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주4) ”저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5) 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편입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성격에 따라 위험 등급이 결정됩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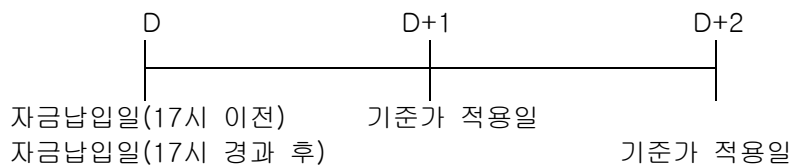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1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1 :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2 :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3 :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4 :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i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종류 Ce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w : 일임형종합관리계좌, 금전신탁계좌
- 종류 Cy : 변액보험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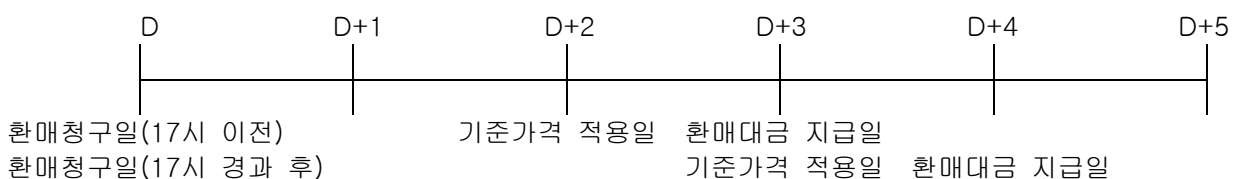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종류형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0) 정기지급금

① 판매회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이하 “수시환매”라 한다.)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및 판매회사의 정기지급 시스템 미보유시, 환매업무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릅니다.

②수익자는 지급주기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여, 정기지급금액을 보유하는 종류 수익증권별 순자산가치(종류별 수익증권 보유좌수 X 종류별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월0.7% 이하가 되도록 판매회사와 정할 수 있습니다.

③판매회사에 정기지급금을 수령한다는 뜻을 밝힌 수익자는 정기지급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의 전전전 영업일에 정기지급금에 상당하는 보유 수익증권좌수에 대하여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것으로 봅니다.

④정기지급금 지급일의 지정, 지급일 및 지급금액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투자신탁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집합투자규약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 조 정기지급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⑥집합투자규약 제41조(환매수수료)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지급금에 대하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다. 전환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클래스에 한합니다.

-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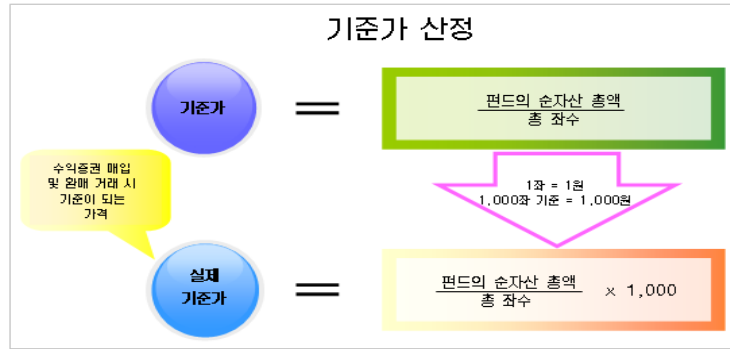
(5) 신탁계약서 제41조(환매수수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① (1)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을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종류 A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종류 Cy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	-	-	-	-	-	-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	-	-	-	-	-	-
환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li> <li>○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50%</li> </ul>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종류 A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종류 Cy	
집합투자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매3

업자보수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000	0.9500	0.8500	0.7600	0.6800	0.6000	0.6640	0.0000	0.0100	
신탁업자 보수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기타비용	0.0111	0.0106	0.0120	0.0081	0.0135	0.0107	0.0109	0.0211	0.0200	발생시
총보수· 비용	1.3011	1.3506	1.2520	1.1581	1.0835	1.0007	1.0649	0.4111	0.4200	-
합성 총보 수·비용 (실제운용 되는 투자 신탁의 총보수·비 용 포함) (클래스 투 자집합투자 기구 총보 수·비용 포함)	1.3011	1.3506	1.2520	1.1581	1.0835	1.0007	1.0649	0.4111	0.4200	-
증권거래비용	0.0433	0.0377	0.0376	0.0564	0.0040	0.0486	0.0472	0.0522	0.0500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29 ~ 2012.06.28 ]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29 ~ 2012.06.28 ]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펀드(실제 운용 되는 펀드)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A1	30	130	405	700	1,535
	종류 C	-	135	389	635	1,339
	종류 Ci	-	100	312	541	1,199
	종류Ce	-	106	332	575	1,272
	종류Cw	-	41	129	225	507
	종류Cy	-	42	132	230	51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 C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약정 : 별도의 약정은 판매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판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sup>1)</sup>

주1) 환급비율:(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과표기준가격 :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 2011.06.29 - 2012.06.28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기( 2010.06.29 - 2011.06.28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기( 2009.06.29 - 2010.06.28 )	안진회계법인	적정

#### 가. 요약재무제표(단위 : 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3기 ( 2012.06.28 )	제 2기 ( 2011.06.28 )	제 1기 ( 2010.06.28 )
운용자산	28,877,214,689	70,326,312,320	258,234,913,358
증권	28,699,921,433	69,926,304,317	231,603,399,91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77,293,256	400,008,003	26,631,513,44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075,461,113	10,783,507,801	2,752,519,522
자산총계	29,952,675,802	81,109,820,121	260,987,432,88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407,871	9,972,114,229	213,180,684
부채총계	6,407,871	9,972,114,229	213,180,684
원본	28,210,095,505	69,218,713,726	243,810,924,933
수익조정금	-834,353,016	-4,007,921,544	12,378,394,058
이익잉여금	2,570,525,442	5,926,913,710	4,584,933,205
자본총계	29,946,267,931	71,137,705,892	260,774,252,196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3기 ( 2011.06.29 - 2012.06.28 )	제 2기 ( 2010.06.29 - 2011.06.28 )	제 1기 ( 2009.06.29 - 2010.06.28 )
운용수익	2,574,067,612	5,937,452,110	4,603,347,455
이자수익	1,800,871,753	7,169,214,061	3,372,105,831
배당수익	17,447,625	152,658,000	12,768,250
매매/평가수익(손)	755,748,234	-1,384,419,951	1,218,473,37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9,25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9,250
기타비용	3,542,170	10,538,400	18,405,000
당기순이익	2,570,525,442	5,926,913,710	4,584,933,205
매매회전율	797.26	474.59	1,158.47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 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 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대차대조

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모)

[단위:원]

과 목	제3기(2012.06.28)		제2기(2011.06.28)		제1기(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177,293,256		400,008,003		26,631,513,44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31,856		109,693,003		42,769,995	
2. 예치금					24,315,850,948	
3. 증거금	175,361,400		290,315,000		2,272,892,500	
<b>대출채권</b>		4,286,254,424		26,934,422,605		45,392,114,798
1. 풀론	2,193,540,000		1,075,850,000		488,06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2,092,714,424		25,858,572,605		44,904,054,798	
4. 대출금						
<b>유가증권</b>		24,413,667,009		42,991,881,712		186,211,285,117
1. 지분증권	1,074,834,080		89,964,000		11,656,131,000	
2. 채무증권	23,338,832,929		42,901,917,712		174,555,154,117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1,075,461,113		10,783,507,801		2,752,519,52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849,000,000		805,165,922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075,461,113		934,507,801		1,936,892,600	
4. 미수배당금					10,461,000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철약금						
<b>자 산 총 계</b>		29,952,675,802		81,109,820,121		260,987,432,880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6,407,871		9,972,114,229		213,180,68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182,000		9,852,000,00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503,310		117,621,017		198,005,990	
4. 수수료미지급금	1,722,561		2,493,212		4,599,524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10,575,170	
<b>부 채 총 계</b>		6,407,871		9,972,114,229		213,180,684
<b>자 본</b>						
1. 원 본	28,210,095,505		69,218,713,726		243,810,924,93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1,736,172,426		1,918,992,166		16,963,327,263	
(발행좌수 당기: 28,210,095,505 좌 전기: 69,218,713,726 좌) 전전기: 243,810,924,933 좌)		2,570,525,442		5,926,913,710		4,584,933,205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834,353,016		-4,007,921,544		12,378,394,058
<b>자 본 총 계</b>		29,946,267,931		71,137,705,892		260,774,252,196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29,952,675,802		81,109,820,121		260,987,432,880

투자신탁명 : <b>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1</b>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3기(2012.06.28)		제2기(2011.06.28)		제1기(2010.06.28)	
		금액		금액		금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0		0		0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3,784,246,942		5,909,234,784		177,740,208,283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옥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0		136,156,58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3,784,246,942		5,909,234,784		177,876,364,869
<b>운 용 부 채</b>			0		0		0
1. 동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9,377,336		45,388,048		636,217,32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9,377,336		45,388,048		636,217,328
<b>자 본</b>			3,603,569,490		5,782,642,623		167,891,352,575
1. 원본							
2. 집합투자기안정조정금			171,300,116		81,204,113		9,348,794,966
3. 미확인여금							
(발행회수 당기: 3,603,569,490 좌							
전기: 5,782,642,623 좌			161,533,696		2,797,195,420		2,121,784,608
(기준가격 당기: 167,891,352,575 좌			9,766,420		-2,715,991,307		7,227,010,358
전기: 1,000.00 원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3,774,869,606		5,863,846,736		177,240,147,541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3,784,246,942		5,909,234,784		177,876,364,869

투자신탁명 : <b>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e</b>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3기(2012.06.28)		제2기(2011.06.28)		제1기(2010.06.28)	
		금액		금액		금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0		0		0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301,553,843		691,937,182		3,582,805,628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옥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0		41,777,95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301,553,843		691,937,182		3,624,583,584
<b>운 용 부 채</b>			0		0		0
1. 동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781,980		1,809,357		49,932,74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781,980		1,809,357		49,932,748
<b>자 본</b>			286,321,489		678,552,744		3,372,868,145
1. 원본							
2. 집합투자기안정조정금							
3. 미확인여금			14,450,374		11,575,081		201,782,691
(발행회수 당기: 286,321,489 좌							
전기: 678,552,744 좌			25,549,301		49,678,581		70,571,246
(기준가격 당기: 3,372,868,145 좌			수익조정금		-38,103,500		131,211,445
전기: 1,000.00 원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300,771,863		690,127,825		3,574,650,836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301,553,843		691,937,182		3,624,583,584

투자신탁명 :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A-1					
과목	제3기(2012.06.28)	제2기(2011.06.28)		제1기(2010.06.28)	
	금액	금액		금액	
<b>운용자산</b>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 매입어음					
3. 대출금					
<b>유가증권</b>	8,540,383,817		17,507,474,420		70,161,063,245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측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타 자산</b>	503,310		0		20,071,44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장산미수금					
3. 미수배당금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8,540,887,127</b>	<b>17,507,474,420</b>	<b>70,181,134,693</b>		
<b>운용부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타부채</b>	26,110,471		56,915,404		209,323,16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장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501,708				20,017,868
4. 수수료미지급금	25,608,763		56,915,404		189,305,295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26,110,471</b>	<b>56,915,404</b>	<b>209,323,163</b>		
<b>자본</b>	8,124,975,480	17,199,524,293	66,250,553,614		
1. 원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389,801,176	251,034,723	3,721,257,916		
(발행과수 당기: 8,124,975,480 좌)					
미익잉여금	585,373,515	1,106,902,121	1,044,298,856		
전전기: 17,199,524,293 좌)					
수익조정금	-195,572,339	-855,867,398	2,676,959,060		
(기준가격 당기: 66,250,553,614 좌)					
전전기: 1,000.00 원)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8,514,776,656</b>	<b>17,450,559,016</b>	<b>69,971,811,530</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8,540,887,127</b>	<b>17,507,474,420</b>	<b>70,181,134,693</b>		

투자신탁명 :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i					
과목	제3기(2012.06.28)	제2기(2011.06.28)		제1기(2010.06.28)	
	금액	금액		금액	
<b>운용자산</b>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 매입어음					
3. 대출금					
<b>유가증권</b>	2,147,346,557		2,042,980,757		9,219,352,352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측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타 자산</b>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장산미수금					
3. 미수배당금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2,147,346,557</b>	<b>2,042,980,757</b>	<b>9,219,352,352</b>		
<b>운용부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타부채</b>	5,329,669		5,105,608		20,598,77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장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329,669		5,105,608		20,598,772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5,329,669</b>	<b>5,105,608</b>	<b>20,598,772</b>		
<b>자본</b>	2,037,875,149	2,002,647,197	8,687,743,958		
1. 원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104,141,739	35,227,952	511,009,622		
(발행과수 당기: 2,037,875,149 좌)					
미익잉여금	104,141,739	84,331,091	198,758,573		
전전기: 2,002,647,197 좌)					
수익조정금	0	-49,103,139	312,251,049		
(기준가격 당기: 8,687,743,958 좌)					
전전기: 1,000.00 원)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2,142,016,888</b>	<b>2,037,875,149</b>	<b>9,198,753,580</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2,147,346,557</b>	<b>2,042,980,757</b>	<b>9,219,352,352</b>		

투자자산명 :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1기(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 출 채 권			0	0	0
1. 불환 조건부채권매수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 가 증 권			70,822,688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 생 상 품			0	0	0
1. 파생상품					
부 동 산 과 실 물 자 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속산물					
기 타 운 용 자 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미사입금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70,822,688</b>	<b>0</b>	<b>0</b>
<b>부 채</b>					
운 용 부 채			0	0	0
1. 출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63,750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63,750</b>	<b>0</b>	<b>0</b>
<b>자 본</b>					
1. 원본			70,078,010		
2. 집합투자기구조조정금					
3. 미회입어음			680,928		
(발행좌수입기: 70,078,010 좌좌좌)			미회입어음 474,264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수익조정금 206,664)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원원원)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원원원)					
<b>자 본 총 계</b>			<b>70,758,938</b>	<b>0</b>	<b>0</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70,822,688</b>	<b>0</b>	<b>0</b>

투자자산명 :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2기(2012.06.28)		제1기(2011.06.28)	
		금	액	금	액
<b>자 산</b>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 출 채 권			0	0	0
1. 불환 조건부채권매수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 가 증 권			150,335,373	44,986,078,749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 생 상 품			0	0	0
1. 파생상품					
부 동 산 과 실 물 자 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동산물					
4. 속산물					
기 타 운 용 자 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0	117,621,017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미사입금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150,335,373</b>	<b>45,103,699,766</b>	<b>0</b>
<b>부 채</b>					
운 용 부 채			0	0	0
1. 출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506,523	236,274,865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506,523</b>	<b>236,274,865</b>	<b>0</b>
<b>자 본</b>					
1. 원본			142,897,927	44,212,216,222	
2. 집합투자기구조조정금					
3. 미회입어음			6,930,923	655,208,679	
(발행좌수입기: 142,897,927 좌좌좌)			미회입어음 1,094,408,114		
(기준가격 전전기: 44,212,216,222 수익조정금 -1,087,477,191)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원원원)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원원원)					
<b>자 본 총 계</b>			<b>149,828,850</b>	<b>44,867,424,901</b>	<b>0</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150,335,373</b>	<b>45,103,699,766</b>	<b>0</b>

투자신탁명 : <b>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3</b>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2기(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1. 현금및현금성자산			0		0	0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 매입어음						
3. 대출금						
<b>유가증권</b>		15,022,401,399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5,022,401,399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결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15,022,401,399		0		0
<b>운 용 부 채</b>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39,737,657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결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39,737,657		0		0
<b>자 본</b>						
1. 원본		14,295,108,806				
2. 결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회영여금		687,554,936				
(발행좌수 전기: 14,295,108,806		미회영여금		0		0
전기: 14,295,108,806		수익조정금		592,723,340		
(기준가격 전기: 1,000.00						
전기: 1,000.00						
전전기: (원인)						
<b>자 본 총 계</b>		14,982,663,742				0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15,022,401,399				0

다. 손익계산서(단위 : 원)

투자신탁명 : <b>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모)</b>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3기(2011.06.29-2012.06.28)		제2기(2010.06.29-2011.06.28)		제1기(2009.06.29-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1,818,319,378		7,387,389,403		3,462,934,024
1. 미 자 수 익	1,800,871,753		7,234,731,403		3,450,165,774	
2. 배당금수익	17,447,625		152,658,000		12,768,25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2,221,620,054		5,141,547,791		3,254,882,178
1. 지분증권매매차익	1,709,534,803		3,976,684,777		2,862,569,418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462,389,108		1,122,501,082		368,745,233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48,214,904		42,361,932		15,803,600	
7. 기타거래차익	1,481,239				7,763,927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465,871,820		6,590,060,799		2,113,338,927
1. 지분증권매매차손	414,062,605		2,707,706,441		497,666,69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039,795,053		3,657,748,665		1,598,658,20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2,014,162		191,235,835		14,243,146	
8. 기타거래손실			33,369,858		2,770,878	
<b>운 용 비 용</b>		3,542,170		11,962,685		19,544,07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542,170		11,962,685		19,544,070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570,525,442		5,926,913,710		4,584,933,205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91120764		0.085625886		0.018805282



##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1**

[단위:원]

과 목	제3기(2011.06.29-2012.06.28)		제2기(2010.06.29-2011.06.28)		제1기(2009.06.29-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355,414		3,230,832		15,025,544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55,414		3,230,832		15,025,544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207,288,435		3,999,651,442		2,895,439,31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07,288,435		3,999,651,442		2,895,439,314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349,196		9,336,486		653,745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49,196		9,336,486		653,745	
<b>운 용 비 용</b>		45,760,957		1,196,350,368		788,026,505
1. 운용수수료	11,930,696		311,904,399		205,461,517	
2. 판매수수료	32,385,851		846,601,972		557,682,709	
3. 수탁수수료	783,929		20,496,550		13,501,62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660,481		17,347,447		11,380,650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61,533,696		2,797,195,420		2,121,784,608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44826025		0.483722586		0.012637843

##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e**

[단위:원]

과 목	제3기(2011.06.29-2012.06.28)		제2기(2010.06.29-2011.06.28)		제1기(2009.06.29-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14,023		285,304		2,277,199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4,023		285,304		2,277,199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30,658,267		68,296,278		86,132,8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0,658,267		68,296,278		86,132,875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		821,698		6,471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		821,698		6,471	
<b>운 용 비 용</b>		5,122,988		18,081,303		17,832,357
1. 운용수수료	1,697,444		5,990,207		5,908,538	
2. 판매수수료	3,221,664		11,366,047		11,210,196	
3. 수탁수수료	111,445		393,590		388,14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2,435		331,459		325,479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5,549,301		49,678,581		70,571,246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89232915		0.073212556		0.020923215

##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A-1**

[단위: 원]

과 목	제3기(2011.06.29-2012.06.28)		제2기(2010.06.29-2011.06.28)		제1기(2009.06.29-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148,233		2,887,117		5,114,708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48,233		2,887,117		5,114,708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736,301,498		1,722,784,780		1,361,657,85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36,301,498		1,722,784,780		1,361,657,854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37,139		15,351,667		17,44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	37,139		15,351,667		17,443	
<b>운 용 비 용</b>		151,039,077		603,418,109		322,456,263
1. 운용수수료	40,901,778		163,405,399		87,326,136	
2. 판매수수료	105,179,734		420,189,128		224,554,499	
3. 수탁수수료	2,687,791		10,738,043		5,738,47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269,774		9,085,539		4,837,158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585,373,515		1,106,902,121		1,044,298,856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72046189		0.064356554		0.01576287

##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i**

[단위: 원]

과 목	제3기(2011.06.29-2012.06.28)		제2기(2010.06.29-2011.06.28)		제1기(2009.06.29-2010.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0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125,027,620		115,034,947		241,839,75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25,027,620		115,034,947		241,839,754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2		5		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	2		5		6	
<b>운 용 비 용</b>		20,885,879		30,703,851		43,081,175
1. 운용수수료	7,367,149		10,828,767		15,194,486	
2. 판매수수료	12,629,522		18,563,795		26,047,857	
3. 수탁수수료	483,962		711,441		998,333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05,246		599,848		840,499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04,141,739		84,331,091		198,758,573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51103101		0.042109809		0.022878042

##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C-#**

[단위:원]

과목	제1기(2010.03.12-2010.06.28)		금액		금액	
	금	액	금	액	금	액
<b>운용수익</b>						
<b>1. 투자수익</b>		0		0		0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541,073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541,073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0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						
<b>운용비용</b>		66,809		0		0
1. 운용수수료	60,070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3,896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843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474,264		0		0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06767658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채권혼합(모)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692	692	295	306	705	724	282	299
2010.6.29-2011.6.28	2,438	2,438	1,282	1,307	3,028	3,093	692	711
2009.6.29-2010.6.28	0	0	2,790	2,933	352	371	2,438	2,608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58	58	52	54	74	75	36	38
2010.6.29-2011.6.28	1,679	1,679	217	219	1,838	1,867	58	59
2009.6.29-2010.6.28	0	0	1,927	2,011	249	259	1,679	1,772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 [채권혼합]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7	7	0	1	4	5	3	3			
2010.6.29-2011.6.28	34	34	5	5	32	32	7	7				
2009.6.29-2010.6.28	0	0	59	61	25	26	34	36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A-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172	172	10	10	101	103	81	85
2010.6.29-2011.6.28	663	663	115	116	605	615	172	175
2009.6.29-2010.6.28	0	0	740	770	77	81	663	70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20	20	0	0	0	0	20	21
2010.6.29-2011.6.28	87	87	23	24	90	91	20	20
2009.6.29-2010.6.28	0	0	87	90	0	0	87	92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6.29-2011.6.28	1	1	0	0	1	1	0	0
2009.6.29-2010.6.28	0	0	1	1	0	0	1	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C-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442	442	23	24	464	475	1	1
2010.6.29-2011.6.28	0	0	785	801	343	350	442	449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채권혼합]C-3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6.29-2012.6.28	0	0	191	198	48	49	143	15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

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7.09 ~12.07.08	10.07.09 ~12.07.08	09.07.09 ~12.07.08		09.06.29 ~12.07.08
멀티플레이 30 공모주(모)	6.11	4.45	5.32		5.29
비교지수	-1.34	4.44	5.73		5.98
C-1	4.71	3.07	3.94		3.90
비교지수	-1.34	4.44	5.73		5.98
C-e	5.01	3.37	4.27		4.25
비교지수	-1.34	4.44	5.73		6.03
A-1	4.76	3.12	3.99		3.97
비교지수	-1.34	4.44	5.73		5.86
C-i	5.07	3.42			4.29
비교지수	-1.34	4.44			5.72
C-2	4.81	3.17			3.19
비교지수	-1.34	4.44			4.40
C-3	4.90				4.88
비교지수	-1.34				-0.57
C-4					0.20
비교지수					0.00

주 1)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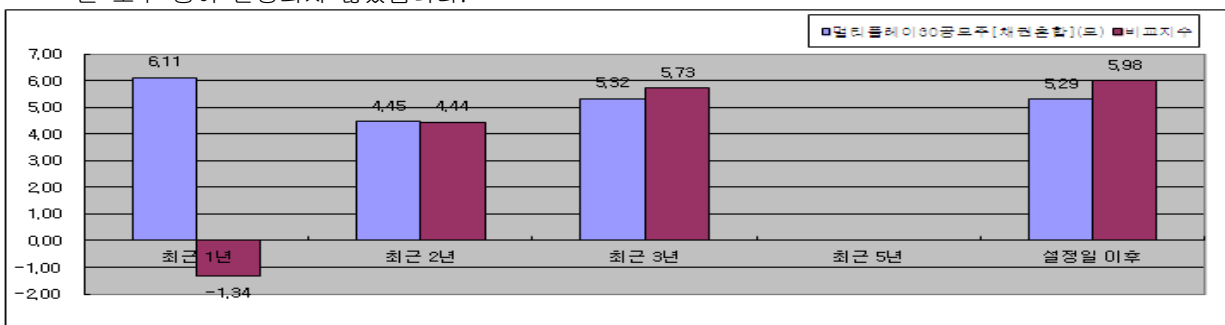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률입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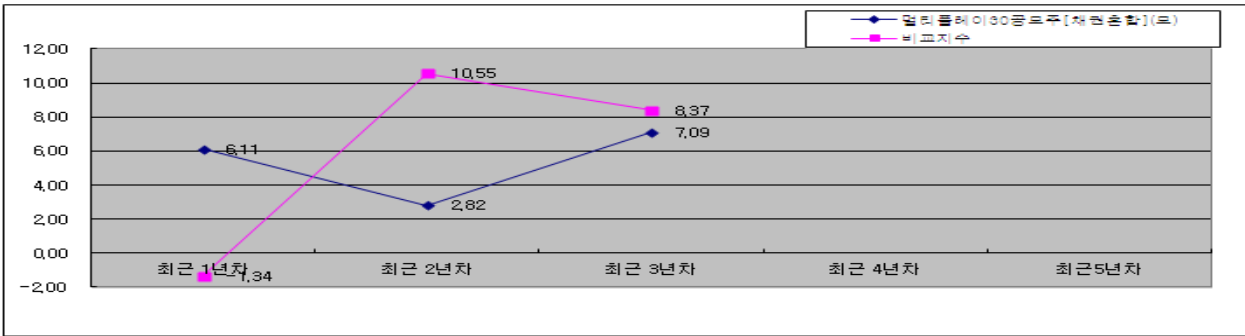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7.09 ~12.07.08	10.07.09 ~11.07.08	09.07.09 ~10.07.08	09.06.29 ~09.07.08	
멀티플레이 30 공모주(모)	6.11	2.82	7.09		
비교지수	-1.34	10.55	8.37		
C-1	4.71	1.45	5.70		
비교지수	-1.34	10.55	8.37		
C-e	5.01	1.75	6.12		
비교지수	-1.34	10.55	8.37		

A-1	4.76	1.50	5.75		
비교지수	-1.34	10.55	8.37		
C-i	5.07	1.80	6.04		
비교지수	-1.34	10.55	8.32		
C-2	4.81	1.55			
비교지수	-1.34	10.55			
C-3	4.90				
비교지수	-1.34				
C-4					
비교지수					

- 주 1)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text{ 금리}])$
- 주 2)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율입니다.
-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5)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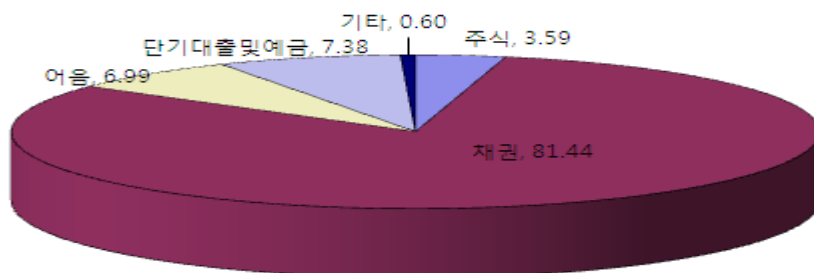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12.6.28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 액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1	244	21							22	2	300
	(3.59)	(81.44)	(6.99)							(7.38)	(0.60)	(100.00)
합계	11	244	21							22	2	300
	(3.59)	(81.44)	(6.99)							(7.38)	(0.6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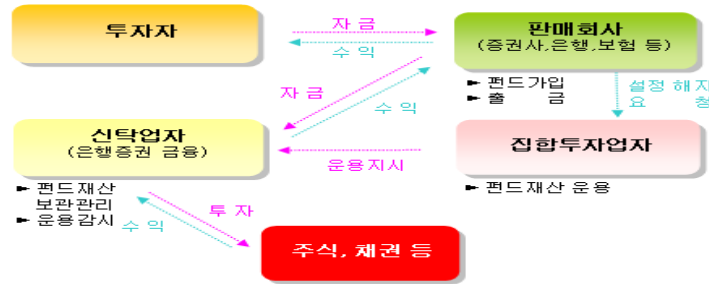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3층 (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li> <li>-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li> <li>-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li> <li>-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li> <li>-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li> <li>-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li> <li>- 2012.06.07 흥국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li> </ul>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라)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항 목	'12.3.31	'11.3.31	항 목	'12.3.31	'11.3.31
유동자산	17,353	16,994	영업수익	9,070	11,325
고정자산	3,801	3,812	영업비용	7,307	7,266
자산총계	21,336	20,806	영업이익	1,763	4,059
유동부채	618	1,224	영업외수익	6	10
고정부채	1	18	영업외비용	0	1
부채총계	619	1,242	경상이익	1,769	4,068
자본금	10,000	10,000	특별손익	0	0
이익잉여금	10,717	9,564	세전순이익	1,769	4,068
자본총계	20,717	19,564	당기순이익	1,237	2,996

## 라. 운용자산 규모

[ 2012.07.08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764	13,688	5,867	0	0	2,326	0	2,016	4,899	0	47,442	77,002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번지 (Tel : 2002-1111)
회 사 연 혁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hanabank.com">www.hanabank.com</a>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바)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가) 의무

- ①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회사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흥국자산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15층 (02-739-3590)
회사연혁 등 (설립일) (등록일) (자본금) (종업원수)	- 2000.5.29 - 2000.7.1 - 50 억원 - 43 명	- 2000.6.20 - 2000.7.1 - 30 억원 - 35 명	- 2000.6.16 - 2000.7.1 - 47.5 억 - 39 명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시면 됩니다.
- ③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

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②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③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백만원)
성명(상호)	관계			
흥국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325
흥국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채권	1,020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2011-09-16	흥국무지개증권[채권]	연합자산관리(CP) 매입	1,455	일부해지
2011-10-04	흥국무지개증권[채권]	연합자산관리(CP) 매입	292	일부해지
2011-10-07	흥국무지개증권[채권]	연합자산관리(CP) 매입	195	일부해지
2011-10-12	흥국멀티플레이증권5[채권]	화인엠앤알(CP) 매입	195	일부해지
2011-10-12	흥국무지개증권[채권]	연합자산관리(CP) 매입	1,460	일부해지
2011-10-26	흥국멀티플레이증권3[채권]	화인엠앤알(CP) 매입	195	상환
2011-10-26	흥국멀티플레이증권5[채권]	레인보우 제1차(CP) 매입	182	상환
2011-10-28	흥국멀티플레이증권3[채권]	우리파이낸셜210-2 매입	203	상환
2011-10-28	흥국멀티플레이증권3[채권]	대우건설18-2 매입	205	상환
2011-10-28	흥국멀티플레이증권3[채권]	여천NCC61-2 매입	202	상환
2012-01-09	흥국무지개증권[채권]	효성캐피탈65 매입	1,432	일부해지
2012-03-05	흥국체인지업주식혼합4호(모)	통안0370-1205-01 매입	50	일부해지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2011.12.16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지분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가중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	기업탐방 주선, 세미나 개최 등	40%
	제공 정보의 질적 유용성	30%
주문집행능력	주문집행의 신속성, 정확성	30%
	오류발생 여부	
합 계	-	100%

②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가중치
정보제공능력	세미나 개최 등	35%
매매체결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35%
거래보안유지	거래 내용 누설 금지	10%
중개수수료	수수료의 적정성	10%
결제이행능력	결제 지연, 오류발생 여부	10%
합 계	-	100%

(2) 평가방법

① 지분증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매 2 개월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 항목을 선정하여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② 채무증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 항목을 선정하여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3) 보관 및 관리

- ① 해당 운용본부는 평가방법에 따라 사전에 평가한 내역과 실제 배분내역을 운용본부장이 확인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전 평가내역과 실제 배분내역을 비교하여 주식의 경우 10%이상, 채권의 경우 5%이상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 ② 해당 운용본부는 중개회사 선정 및 약정배분내역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작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지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결원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판매직원 성명:                                  성명 또는 인)——(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 받았음)

고객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